

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
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유승용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10. 20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621호로 2025년 10월 2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·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, 화재 대응 역량과 구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 및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5. 10. 2.~2025. 10. 15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제정 배경 및 취지

- 행정안전부 「화재 인명피해 분석」에 따르면, 화재 사망자의 약 65%가 ‘연기·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’(41.9%) 또는 ‘연기·유독가스 흡입’(23.8%)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, 화재 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
- 특히 환자,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신체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대피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유독가스 흡입 위험이 더욱 높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. 또한,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역시 민원인 등이 많아 화재 발생 시 혼잡으로 인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는 점에서 방연 마스크 비치의 필요성이 높음.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,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·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더 나아가 안전교육과 홍보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구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전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개념과 안전 교육의 정의를 규정하여, 조례 적용대상과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.
- 안 제1호제가목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 방연마스크는 유독가스 14종 중 6개 항목(염화 수소·이산화황·시안화수소·벤젠·일산화탄소·아크롤레인)에 대한 가스 차단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방연마스크 성능이 인정됨.
- 다만, 안 제나목 및 제다목의 “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” 및 “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”의 경우, 현재 방연마스크가 인증 품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나, 향후 인증제품 목록에 추가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사항을 미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3조(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) 및 안 제4조(예산지원)는 구청장이 의료기관, 아동·노인·장애인복지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많은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안내포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각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5조(교육지원) 및 안 제6조(홍보)는 구청장이 방연마스크 사용법 및 화재대피 요령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, 시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

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- 안 제6조(홍보)는 구청장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,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율적인 대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.
- 안 제7조(협력체계 구축)는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연마스크 비치, 교육,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화재피해에 고위험 군인 환자·아동·노인·장애인 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,
- 아울러 안전교육, 홍보 등의 조항을 통해 단순한 물품 지원 뿐만 아니라 화재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고 자료

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8.6, 2023.5.16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12.3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1.16>

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22, 2014.12.30, 2015.7.24, 2019.12.3, 2024.1.16>

[전문개정 2010.6.8]

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안전교육”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.